

발간등록번호
11-1620076-000003-01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부랑인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에서 자체 설문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결과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 12.

책임연구원 함철호(광주대학교 교수)

연구원 이정운(광주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요약본 / 6

제 1 장 서론 / 20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3

제3절 연구내용 / 25

제2장 부랑인의 현황 및 부랑인 인권관련 선행연구 / 26

제1절 부랑인의 현황과 특징 / 27

1. 부랑인에 대한 정의 / 27
2. 부랑인에 대한 정책과정 / 27
3. 부랑인 생활실태 / 30

제2절 부랑인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 33

제3장 연구결과 / 34

제1절 광주, 전남북, 제주 부랑인시설 생활인 현황 / 35

1. 응답자의 특성 / 35
 2. 현재시설에서의 거주기간 / 36
 3. 장애유형 및 장애인등록 / 36
 4. 연고자 / 38
 5.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 39
 6. 근로능력 / 39
 7. 퇴소의향 / 39
-

제2절 시설입소 경로 및 과정 / 40

1. 시설입소경로 / 40
2. 시설입소과정 / 41

제3절 생활인의 인권실태 /42

1. 생활환경 / 42
2. 시설환경 / 44
3. 건강 / 46
4. 식생활 / 48
5. 의생활 / 50
6. 직업재활 / 52
7. 교육, 문화, 종교 생활 / 53
8. 상담서비스 / 55
9. 직원들의 태도 / 56

제4절 자기결정권과 자존감 / 58

1. 자기결정권 / 58
2. 자존감 / 59

제5절 참정권과 개선요구 / 60

1. 참정권 / 60
2. 개선요구 / 61

제6절 결론 / 62

참고문헌 / 64

설문지 / 65

표 목 차

- <표 1> 기관별 설문응답자 수 / 23
 - <표 2> 부랑인 정책 연혁 / 30
 - <표 3>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입소자 현황 / 31
 - <표 4> 종사자 배치기준 / 32
 - <표 5> 응답자 일반적 사항 / 35
 - <표 6> 현재 시설에서의 거주 기간 / 36
 - <표 7> 장애유형 및 장애인등록 여부 / 37
 - <표 8> 신상변동시 연락할 연고자 / 37
 - <표 9> 현재 복용중인 약 / 38
 - <표 10> 근로능력 / 39
 - <표 11> 퇴소의향 / 40
 - <표 12> 시설입소경로 / 41
 - <표 13> 시설입소과정 / 42
 - <표 14> 생활환경 / 44
 - <표 15> 시설환경 / 46
 - <표 16> 건강생활 / 48
 - <표 17> 식생활 / 50
 - <표 18> 의생활 / 51
 - <표 19> 직업재활 / 53
 - <표 20> 교육, 문화, 종교생활 / 55
 - <표 21> 상담서비스 / 56
 - <표 22> 직원들의 태도 / 57
 - <표 23> 자기결정권 / 59
 - <표 24> 자존감 / 60
 - <표 25> 투표장소 / 61
 - <표 26> 특정후보 선택강요 경험 / 61
 - <표 27>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의견제시 및 희망사항 요구 경험 / 62
-

요약본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실태조사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랑인은 여전히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 부랑인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14개(개인시설 1곳 포함)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

□ 연구방법

- 설문조사
- 문헌연구
- 시설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 연구내용

- 부랑인 및 부랑인시설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
- 시설입소 과정 및 경로, 생활환경, 시설환경, 건강, 식생활, 의복, 직업재활, 교육, 문화, 종교생활, 직원들의 자세, 자기결정권, 자존감, 참정권, 감독기관 등 생활전반

연구결과

제 1 절 광주, 전남·북, 제주 부랑인시설 생활인 현황

1. 응답자의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251명 가운데 남자가 77.7%, 여자가 22.3%로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1.32세(표준편차 11.85세)였으며, 50대 이상이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3%, 60대 14.7%, 30대 10.0%, 70대 이상 6.8%, 20대 6.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0%가 미혼이었으며 18.4%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이혼은 21.2%, 별거 7.2%, 사별 3.2%, 기타로는 2.0%로 나타났다.

2. 현재시설에서의 거주기간

- 현재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해 15년 이상이 25.7%로 현재의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7%, 3년 이상 5년 미만 15.8%, 1년 이상 3년 미만 14.9%, 1년 미만 8.7%로 나타났다.

3. 장애유형 및 장애인등록

- 생활인들의 장애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 41.2%가 '장애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 16.5%, 알코올중독 12.2%, 지체장애 9.0%, 시각장애 2.4%, 언어장애 1.6%, 청각장애 2.4%, 청각장애 1.2%, 기타 1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과제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66.8%가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2%는 '등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4. 연고자

-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가능한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54.6%가 '가족에게', 16.2%는 '친척에게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는 '연고자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친구 7.0%, '함께 지내던 동료'가 1.0%로 나타났다.

5. 현재복용하고 있는 약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기타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제외하고 항정신정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23.3%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약 15.8%, 내과 질환 약 9.4%, 당뇨병 약 6.0%, 관절염약 4.5% 순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근로능력

- 일상생활정도와 근로능력에 대해 응답자 65.2%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직업 활동이 자유롭다'라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다'라는 응답이 20.9%, '간단한 활동이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없다'라는 응답이 7.4%,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7. 퇴소 의향

- 생활인들에게 "퇴소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4.4%가 '있다', 45.6%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퇴소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37.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하고 싶어서'가 23.2%, '시설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16.1%, '시설운영자의 부당함 때문에'가 1.8% 순으로 나타났다.
- 또 퇴소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퇴소 후 갈 곳이 없어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등 건강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13.5%, '벌어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가 11.0%,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와, '다시 시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서'가 각각 5.9%, 5.1%로 나타났다.

제 2 절 시설입소 경로 및 과정

- 시설의 입소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인권에 있어 '자기 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과거 부랑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 스스로 선택하였는지, 입소를 강요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랑인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실태를 확인하는데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시설입소에 대해 시설입소경로와 시설입소과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시설입소경로

-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21.2%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해' 26.8%, '경찰관서에 의해' 19.2%, '배회하다 행정기관에 의해' 12.8%, '주위의 아는 사람 권유'로 8.4%, '다른 시설에서의 전원' 5.6%, '상담센터 등의 의뢰에 의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시설입소과정

- "시설에 들어올 때 입소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7.6%, '그렇지 않다' 31.7%, '모르겠다' 20.7%로 나타났다. '모르겠다'의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입소심사는 생활인이 직접 입소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기 보다는 대부분 서류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소당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7.6%, '그렇지 않다' 27.9%, '모르겠다' 8.6%로 나타났다. 입소 당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입소 당일 기준 1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22.4%, 7.3%로 나타났다.
- "입소 시 일정기간 시설 적응의 배려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74.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19.7%, '모르겠다'가 5.7%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입소과정이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입소심사위원회에 생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 연고자 연락, 건강검진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제 3 절 생활인의 인권실태

1. 생활환경

-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1.6%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9.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났다. 시설의 설립시기, 방 규모에 따라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인원수는 최소 4명에서 최고 10명까지 다양하였다.
-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9.8%, ‘그렇다’ 56.9%, ‘그저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과 시간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서 불편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79.5%가 ‘매우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다’ 6.4%, ‘매우 그렇다’가 4.8%로 나타났다.
-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0.1%는 ‘그렇지 않다’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8.1%, ‘그저 그렇다’ 6.9%, ‘매우 그렇다’가 4.9%로 나타났다.
-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5.9%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7.2%,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로 나타났다.
- “생활인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4.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22.0%, ‘그렇지 않다’가 11.0%, ‘매우 그렇지 않다’가 2.8%로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8%로 나타났다.
- “원하는 사람과 방을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6.6%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부정적 응답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43.3%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1.1%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9.6%, ‘그저 그렇다’ 5.6%, ‘매우 그렇지 않다’가 3.6%로 나타났다.
- “본인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35.8%, ‘그렇지 않다’ 29.3%, ‘그렇다’ 18.7%, ‘그저 그렇다’ 11.0%, ‘매우 그렇지 않다’가 5.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 응답이 45.6%로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공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시설환경

- “침실은 청결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6.0%, ‘그렇다’ 52.8%로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지 않다’ 1.6%, ‘매우 그렇지 않다’가 0.4%로 나타났다.
- “겨울철 난방은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6.4%, ‘그렇다’ 55.2%, ‘그렇지 않다’ 4.4%, ‘그저 그렇다’가 4.0%로 나타났다.
- “침실규모는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61.7%, ‘매우 그렇다’ 27.0%, ‘그저 그렇다’ 6.9%, ‘그렇지 않다’ 4.0%, ‘매우 그렇지 않다’가 0.4% 순으로 나타났다.
- “화장실은 청결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4.8%, ‘매우 그렇다’ 27.8%, ‘그저 그렇다’ 12.5%,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가 1.2%로 나타났다.
- “세면장 이용이 편리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7.2%, ‘매우 그렇다’ 26.8%, ‘그저 그렇다’ 11.2%,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가 1.2%로 나타났다.
- “냉방장치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2.0%, ‘매우 그렇다’ 26.0%, ‘그저 그렇다’ 12.2%, ‘그렇지 않다’ 7.7%,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각 방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28.3%, ‘그저 그렇다’ 13.8%,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세탁실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개 시설은 생활실 각 층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 “운동할 공간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25.8%, ‘그저 그렇다’ 12.9%, ‘그렇지 않다’ 7.3%, ‘매우 그렇지 않다’가 2.8%로 나타났다.

3. 건강

-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상담, 정기적 보건교육 실시 여부, 약물교육 여부, 외부 진료와 치료, 의무실 출입, 운동과 휴식, 위생교육, 건강 향상 여부 등을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건강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88.0%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0%,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가 0.8%로 나타났다.
-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응답자 65.9%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20.1%, ‘매우 그렇지 않다’ 2.8% ‘그저 그렇다’ 11.2%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1%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0%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49.9%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약물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플 경우 외부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 ‘그렇다’ 55.0%, ‘매우 그렇다’ 37.3%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5.6%, ‘그렇지 않다’ 1.6%, ‘매우 그렇지 않다’ 0.4%로 아플 경우 외부 진료와 치료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89.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6.4%,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용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의무실 출입과 관련하여 ‘그렇다’ 53.0%, ‘매우 그렇다’ 29.7%로 출입이 자유롭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지 않다’ 6.0%, ‘매우 그렇지 않다’ 2.0%로 1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6.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7%,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가 0.4%로 조사되었다.
- 생활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21.3%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그저 그렇다’ 18.1%, ‘그렇지 않다’ 9.6%, ‘매우 그렇지 않다’ 2.4%로 총 30.1%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처음 입소할 때 보다 건강이 좋아졌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45.8%, ‘매우 그렇다’ 27.3%로 응답해 처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73.1%

였다. 반면 “처음 입소 당시보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 17.7%, ‘그렇지 않다’ 7.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로 나타났다.

4. 식생활

-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응답자 90.4%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4%, ‘그렇지 않다’ 0.4%, ‘매우 그렇지 않다’가 0.8%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식당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0.8%, ‘그저 그렇다’ 12.4%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다’ 22.8%, ‘매우 그렇다’가 15.6%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식사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1.8%, ‘매우 그렇다’ 22.5%가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12.9%, ‘그저 그렇다’ 10.8%,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4.9%는 공식적인 행사나 일 때문에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4.7%, ‘매우 그렇다’ 27.9%로 82.6%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9%, ‘그렇지 않다’ 6.9%, ‘매우 그렇지 않다’ 1.6% 나타났다.
- “본인이 원할 때 외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1.5%와 23.4%로 응답자 64.9%가 외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18.1%, ‘그저 그렇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부정적인 답변이 35.0%였다.
-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26.1%, ‘그저 그렇다’ 17.3%,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4.0%나타났다.

5. 의생활

- 의생활과 관련하여 옷의 위생상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

옷장이나 사물함의 충분정도, 옷의 직접구입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의복과 관련한 생활에 대해 생활인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깨끗한 옷을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8.7%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 6.5%,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4.8%로 조사되었다.
- 과거의 생활시설은 대부분 자유로운 옷을 입기 보다는 제복을 입었다. 이는 생활인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성격이 짙었다.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2.6%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 과거에 비해 제복의 착용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그저 그렇다’ 10.9%,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 “옷장이나 사물함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0.9%, ‘그렇지 않다’ 5.2%, ‘매우 그렇지 않다’ 4.4%로 나타났다.
- “원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5.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20.3%는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6%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6. 직업재활

-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8%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7%, ‘그저 그렇다’가 5.3%로 나타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시설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직업재활프로그램 만족에 대해 응답자 40.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9.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61.7%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8.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환경에 대해 63.9%는 ‘쾌적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36.1%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시설내의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는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29.7%가 ‘매우 그렇다’, 48%는 ‘그렇다’라고 응답해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 13.4%,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가 3.7%로 나타났다.

- 작업장 내 안전시설에 대해 64.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안전시설이 확보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8%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직업재활프로그램 시간에 대해 37.4%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시간이 길거나 짧다고 보고 있으며, 52.6%는 ‘적당하다’라고 응답하였다.

7. 교육, 문화, 종교 생활

-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8%, ‘그렇다’ 51.2%, ‘그저 그렇다’ 8.8%, ‘그렇지 않다’ 6.4%, ‘매우 그렇지 않다’ 2.8%로 응답자 대부분은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8%는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2.4%,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90.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6.4%, ‘그렇지 않다’ 2.4%, ‘매우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났다.
-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3.0%, ‘그렇다’ 45.6%로 68.6%가 외출이 자유롭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0.1%,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지 않다’ 4.4%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다고 응답자는 3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응답자가 자유로운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 “연고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92.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2%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외박이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0.7%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한 한 경우는 39.4%로 나타나 외출의 제한과 함께 외박 역시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할 수 있다.
-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9.5%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30.5%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없거나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생일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 78.8%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21.8%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4.5%, ‘그렇다’ 45.8%, ‘그저 그렇다’ 18.9%,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지 않다’ 4.0%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39.8%로 개인적인 문화 향유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설 가까이에 있는 공원 등과 같은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6.8%, ‘그렇다’ 42.4%로 응답자 5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 18.8%, ‘그렇지 않다’ 17.2%,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응답자 41.2%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자유로운 외출, 자유로운 외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하여 볼 때 일정정도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상담서비스

-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86.4%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7.2%,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 “연고자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4.8%, ‘그렇다’ 54.4%, ‘그저 그렇다’ 10.4%, ‘그렇지 않다’ 7.2%, ‘매우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났다.
-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2.4%, ‘그렇다’ 47.2%, ‘그저 그렇다’ 10.8%,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4%, ‘그렇다’ 49.2%로 응답자 71.6%가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16.0%, ‘그렇지 않다’ 9.6%, ‘매우 그렇지 않다’ 2.8%로 상담 후 필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28.4%로 상담 후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직원들의 태도

-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한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8.4%, ‘그렇다’

49.6%로 응답자 88%가 친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4%, ‘그렇지 않다’ 2.0%,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23.2%, ‘그렇지 않다’ 47.6%, ‘그저 그렇다’ 9.6%, ‘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3.6%로 응답자 29.2%는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31.2%, ‘그렇지 않다’ 50.4%, ‘그저 그렇다’ 5.6%, ‘그렇다’ 8.8%, ‘매우 그렇다’ 4.0%로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8%로 나타났다.
- “건의가 잘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0.8%, ‘그렇다’ 47.6%로 응답자 68.4%는 건의가 잘 받아들여진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 21.2%,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 2.4%로 부정적인 응답은 32.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직원이 나를 때린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 89.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때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로 나타났다.

제 4 절 자기결정권과 자존감

1. 자존감

-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소 1점은 ‘매우 그렇다’, 최대 5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1점에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응답결과 전반적인 자존감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3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랑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시설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자기결정권

- 생활인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소 1점은 '매우 그렇다', 최대 5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1점에 가까울수록 권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 2점 정도로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 참여 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 5 절 참정권과 개선요구

- “투표하는 장소에 대해 선관위에서 설치한 투표소에 나가서 한다”가 73.8%,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한다” 13.7%, “부재자 투표를 한다” 5.6% 기타 6.9%로 나타났다.
- “투표할 때 특정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없다’ 83.2%, ‘있다’ 14.0%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14%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혀 투표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지 강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문제 및 생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91.6%가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6.4%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제 6 절 결론 : 요약과 제언

- 본 연구는 부랑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251명 가운데 남자가 77.7%, 여자가 22.3%로 남성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1.32세(표준편차 11.85세)였으며,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인들의 장애상태를 보면, ‘장애가 없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41.2%), 정신장애(16.5%), 알코올중독(12.2%), 지체장애(9.0%)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66.8%가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유념해보아야 하는 응답이다.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54.6%가 '가족에게', 16.2%는 '친척에게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들은 약 60%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5.2%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직업활동이 자유롭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소 의향'이 없는 응답자보다 있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았다. 시설입소는 본인 스스로(21.2%)한 경우보다, 타인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약 3배 이상 많은 60%가 넘는다. 이러한 응답의 의미는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타인의 강제에 의해 입소하는 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

-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서 불편한가?”,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가?”,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집단생활하는 부랑인들은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인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6%가 나왔고, “생활인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약 20%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시설운영자들에 대한 시설생활인들의 문제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침실은 청결한가?”, “겨울철 난방은 되는가?”, “침실규모는 적당한가?”, “화장실은 청결한가?”, “세면장 이용이 편리한가?”, “냉방장치는 되어 있는가?”,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한가?”, “운동할 공간이 적당한가?”와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상담, 정기적 보건교육 실시 여부, 약물교육 여부, 외부 진료와 치료, 의무실 출입, 운동과 휴식, 위생교육, 건강 향상 여부 등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는데,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약물교육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0.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응답이라고 본다.
-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90%이상의 응답자가 깨끗하다고 응답했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6.7%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다. 반면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3.7%의 응답자가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부랑인시설이 대부분 외진 곳에 있고 근처에 영업용 식당이 없다고 볼 때, 시설의 식사시간을 놓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부랑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의생활과 관련하여 옷의 위생상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 옷장이나 사물함의 충분정도, 옷의 직접구입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40.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자도 38.3%가 되었다. “시설내의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로 9.4%나 되었다. 작업장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64.2%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하고 편지를 쓸 수 있는지,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이 자유로운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80.0%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약 20%정도,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약 40%가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집단생활의 속성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정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0.5%가 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부랑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8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이지 않는 응답자가 28.4%나 되었다.

□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하다는 응답자가 88%나 되지만, 직원들이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한다”라는 응답자도 20%가 넘었다.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2.8%가 되었다. 관련하여 직원들은 시설생활인들이 하는 건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0%를 넘는다.

□ 집단 생활하는 부랑인들의 참정권에 대해 설문을 하였는데, “투표할 때 특정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14%의 응답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부랑인들은 시설 입소과정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부랑인시설입소과정이 부랑인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랑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의미를 보이는 응답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일이건 시설의 공식적인 일이건 부랑인들이 식사시간을 놓쳤을 때, 이 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한 부랑인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다른 항목보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운영자 혹은 종사자들이 시설내에서 부랑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부랑인들에 대한 약물교육이 좀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을 한 경우 조치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부랑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둘째 사항의 경우 상당부분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부랑인 시설의 지도감독 관청인 지방정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권리 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구걸행위자들을 단속하고, 격리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랑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전국에 부랑인생활시설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은 포함하여 52개의 시설이 있다. 2007년 6월말을 기준으로 개인시설을 제외한 법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은 약 7,888명이 있다. 개인시설과 미신고 시설을 포함하면 1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북 지역의 부랑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의 인권의 실태 현황에 초점을 두었다.¹⁾ 부랑인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은 형제복지원사건(1987년), 양지마을사건(1998)이다.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왕국’ 안에서는 일어났던 것이다.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랑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보다 나아졌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의 부랑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인지가 확연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생활인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용방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시설이 아닌 생활공간으로서, 거주 공간으로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1) 본 조사연구를 시작하면서 부랑인시설과 관련하여 부랑인시설을 ‘부랑인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의미, 수용이 아닌 생활의 주체적 입장에서 ‘거주’라는 개념으로, ‘생활자’가 아닌 생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생활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랑인시설은 ‘수용’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랑인시설을 생활 또는 거주의 공간으로, 생활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랑인 시설’ 또는 ‘생활자’, ‘수용자’라고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역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권은 계급, 재산정도, 성별, 거주지역, 종교적 이유 등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장되는 것이며, 어떠한 차별로부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권보장의 출발은 태어날 때 이전부터 작은 생명체의 시작부터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실태조사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부랑인의 생활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의 14개(개인시설 1곳 포함) 부랑인생활시설의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해야 하기에 인지가능력이 있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생활인들로 설문조사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각 시설별 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기관별 설문응답자 수

기관명	빈도	백분율(%)	기관명	빈도	백분율(%)
합 계				250	100
광주희망원	28	11.2	전남 여수 금강원	11	4.4
전남해남 거자씨	20	8.0	전북 이리자선원	15	6.0
전남 해남 희망원	20	8.0	전북 완주 원암의 집	23	9.2
전남 무안 동명원	17	6.8	전북 군산 신애원	14	5.6
전남 무안 진성원	23	9.2	전북 전주 사랑의 집	16	6.4
전남 담양 기쁨원	16	6.4	제주 희망원	15	6.0
전남 순천 인애원	18	7.2	서귀포 사랑원	14	5.6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에 관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부랑인 인권에 관한 문헌연구, 시설관계자(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

생활인의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진이 4회에 걸쳐 인권에 대한 학습과 설문지 작성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치적 권리 등,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을 포함 평균 4~5명의 조사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인 스스로 기입하거나 조사원이 설문문항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목적과 내용, 조사방법, 기관 방문 예절, 설문 조사 진행시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²⁾

조사는 2007년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시설을 방문하기 전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조정하였다.³⁾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는 262명이었으나

- 2) 제주도의 경우 현지에 살고 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조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조사원을 구성하였으며, 조사 진행 전 조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진행한 후 조사를 하였다.
- 3)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시설에 대한 조사 진행 전 연구자에게 조사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왔다. A시설에 사전에 조사일정을 알리지 말고 바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전에 일정을 알릴 경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A시설에 언제 방문할 것인지를 알린 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확한 응답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중단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2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본 연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각 설문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빈도와 경향을 알아보았다. 분석단위는 개인이고 SPSS/PC win 10.0K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 문헌 연구는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문헌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랑인 인권에 관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랑인 인권에 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 생활인 스스로 또는 시설관계자에 의한 생활인 인권 운동이 아직 시작단계라는 현실적인 여건이 말해주듯 많은 연구는 이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황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보고서 등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3) 시설관계자 면담 및 의견청취

시설관계자에 대한 면담은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인권에 대한 생각, 시설 운영과 인권과의 상관관계, 시설 직원의 인권문제, 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사항 등으로 진행하였다.

제 3 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책들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인권 관련 지표들을 활용한 설문을 구성하여 현재의 인권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된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입소 과정 및 경로

- 입소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입·퇴소심사위원회 심사여부, 연고자 연락,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입소 시 시설 적응을 위한 배려를 받았는지 등의 내용이다.
- 입소경로에 대한 질문으로 본인의 의지인지 가족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인지 등의 내용이다.

○ 생활환경

-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원수의 적절성, 일과 시간 후 자유 시간, 직원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여부, 사생활감시, 자유로운 대화, 시설운영에 대한 생활인의 의견반영, 원하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는지, 본인의 통장 잔액확인여부 등의 내용이다.

○ 시설환경

- 침실의 청결정도, 냉난방, 화장실 청결정도, 세면장 이용 편리성,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 편리성, 운동공간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다.

○ 건강

- 건강 상담, 정기적 보건교육 실시 여부, 약물교육 여부, 외부 진료와 치료, 의무실 출입, 운동과 휴식, 위생교육, 건강 향상 여부 등의 내용이다.

○ 식생활

- 식당의 청결, 정해진 식사시간외 식사 여부, 식단, 원할 때 외식이 가능한가, 식사의 만족도, 급식 및 식사도구의 위생상태, 환자식 배려 여부, 식수위생, 간신구입여부, 간단한 음식 조리여부 등의 내용이다.

○ 의복

- 옷 위생상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 옷장이나 사물함의 충분성, 옷의 직접구입 여부 등의 내용이다.

○ 직업재활

- 재활프로그램 진행여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만족도,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여부, 프로그램 및 작업공간의 쾌적성, 자발적 참여여부, 본인의 수익금 입금여부, 안전시설, 프로그램 시간 등의 내용이다.

○ 교육, 문화, 종교생활

- 자유로운 전화, 서신, 외출을 할 수 있는가, 연고자 면회, 외박, 특정 종교의 강요, 생일, 여행, 개인 취향에 따른 문화생활, 근린시설 이용 등의 내용이다.

○ 상담서비스

- 언제든지 상담가능한가,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직원들의 친절, 상담 후 사후 조치 등의 내용이다.

○ 직원들의 자세

- 직원들의 친절정도,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른 차별, 욕설이나 비인간적 처우, 건의 사항 수용, 직원의 구타 여부 등의 내용이다.

○ 자기 결정권

- 입·퇴소심사위원회 회의 참여요구, 방의 선택 및 이전요구, 필요한 서비스 및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개선 요구,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요구, 자신의 재산 확인 및 정보제공 요구,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에 대한 정보 알권리요구, 노후 보장에 관한 요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항상 제시 할 수 있는 요구 등의 내용이다.

○ 자존감

- 자신의 가치, 성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을 잘 할 수 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이다.

○ 참정권

- 투표를 어디에서 하는지, 특정 후보 선택에 대한 강요 등의 내용이다.

○ 감독기관

- 시설운영 문제 및 생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가 등의 내용이다.

셋째. 향후 부랑인 및 부랑인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이다. 부랑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부랑인생활시설 역시 지역과 격리 되어 있다. 또한 생활인들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생활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과 이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제2장 부랑인의 정의 및 인권관련 선행연구

제 2 장 부랑인의 정의 및 인권관련 선행연구

제 1 절 부랑인의 현황과 특징

1. 부랑인에 대한 정의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다.⁴⁾ 우리 사회의 인식은 범죄자, 병자, 결인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에서부터 사회복지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랑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부랑’(浮浪)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이고, ‘부랑자’는 “편동편동 놀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다(이희승, 2000).

1975년에 발표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결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규정」에 부랑인은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자, 또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 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결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폐질자”로 규정하였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중회(1991)는 부랑인에 대해 철학적,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연고자와 실제적인 인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4) 부랑인과 부랑인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정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2000년에 복지부령으로 제정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하고 있다.

- 일용직 건설 노동자, 날품팔이, 행상, 구걸 등으로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살고 있는 점
-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하철 역, 공원, 여인숙 등에서 기거하며 잠자리가 분명치 않은 점.
- 주위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반사회적 언동을 자주하는 점
- 심한 열등의식이나 우울 반응을 보이고, 인관관계에서 주저하는 반응을 보인다.

부랑인은 노숙자와 구별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노숙자’, ‘거지’, ‘행려인’, ‘무의무탁자’, ‘무주거자’, ‘무거처자’, ‘무주택자’와 혼용되고 있고, 노숙자 속에 부랑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부랑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거리 생활인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개념화하려는 사회통념 내지 언어적 습관,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용어로 사용해오고 있는 제도적 관행 때문이다. 노숙자가 현재의 조건을 표현하는 현상적 개념이라면 부랑인이란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2. 부랑인에 대한 정책과정

우리나라에서 부랑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사회적 지원을 통한 재활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적 격리와 배제 그리고 처벌위주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부랑인에 대한 정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안처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랑아(인)에 대한 수용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법적 근거는 1975년 발표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다.⁵⁾

5)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이미 1950년대 1960년대에 보안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을 하였다. 1955년과 1956년에 43개소의 부랑아수용시설이 있었으며, 1963년에는 24개소의 부랑아수용시설과 16개의 부랑인수용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호(1995)를 참조바람.

<표 2> 부랑인 정책 연혁

년도	내 용
1970. 1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무부 훈령 제410호)
1981. 10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1987. 4. 6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1999. 4.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 부령)
2000. 8.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02.12.13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9호)
2005. 1. 5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

출처 : 2008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부랑인생활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충남 성지원 사건 등 부랑인 복지시설 내 인권유린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후 시설운영에 대한 체계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남기철,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처벌과 격리차원에서 시행되었다. 1987년 3월 19일자로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명의로 새로이 「부랑인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을 내린 바, 이에 따르면 부랑인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치안차원에서 처벌, 보호조치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라고 되어 있다(이승호, 1995).

이후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훈령이 부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로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2005년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노숙인시설도 포함하는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을 보건복지부령 제370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부랑인은 여전히 사회적인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도 부랑인은 보호의 대상이기 보다는 전염병을 옮기거나 범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빈곤을 구제하거나 하는 방법보다는 강제적, 억압적 대책의 대상이었다(박광준, 2004).

2. 부랑인 생활실태

대부분의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들은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정신박약, 결핵, 신체장애, 중복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07년 6월말 광주, 전남·북, 제주의 부랑인생활시설의 생활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입소자 현황

구분	시설수	성별		건강상태별					
		남	여	정상인	정신 질환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청각	정신 박약
전국합계	38	5,332	2,556	605	3,282	822	91	229	1,577
3개시도	13*	863	363	113	517	108	12	21	214
광주	1	96	29	58	31	4	1	2	10
전북	4	178	109	25	65	29	5	6	100
전남	6	480	191	24	369	38	3	12	99
제주	2	109	34	6	52	37	3	1	5

* 이 합계에는 전남의 개인시설 1곳은 제외되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2007), 2007년 상반기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2007. 6월말현재

생활인들의 건강상태는 2002년 12월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 부랑인이 19% (건강 13%, 허약 6%), 장애인이 26%(지체장애 9%, 정신지체 14%, 시각장애 1%, 언어장애 2%), 정신질환자 40%(정신분열 32%, 간질 3%, 알코올중독 5%), 노인(치매 3%, 요양 3%, 일반 2%), 신체질환자(와상환자 4%, 결핵 1%, 만성질환 2%)가 분포되어 건강상태가 전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최 협 외, 2004).

부랑인생활시설의 생활인들에 대한 영양과 급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진미(2002)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1일 주·부식·간식비를 포함한 급식비가 2,943원이었으며, 최소 2,471원에서 최대 4,246원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당시 50인 이상 시설에서 영양사 1명을 고용하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있으나, 조사대상 기관 27곳 중 3곳의 경우 영양사 미채용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사 자격증을 소유한 정규종업원이 1명도 없는 시설이 14곳으로 조사되었다.

부랑인생활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종사자 배치기준

시도	시 설 명	생활자 (입원자포함)	계 (종사자)	원 장	사 무 국 장	상 담 부 장	생 활 지 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 활 도 원	조 리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촉 탁 의 사
계		7793 (9,076)	751	37	37	41	255	63	35	158	34	37	38	16
광주	광주희망원	126 (247)	17	1	1	1	6	1	1	3	1	1	1	-
전북	소 계	294 (321)	55	4	4	4	10	4	4	13	4	4	4	-
	전주사랑의집	61 (61)	13	1	1	1	2	1	1	3	1	1	1	-
	신 애 원	56 (63)	13	1	1	1	2	1	1	3	1	1	1	-
	이리자선원	102 (118)	14	1	1	1	3	1	1	3	1	1	1	-
	원암의집	75 (79)	15	1	1	1	3	1	1	4	1	1	1	-
전남	소 계	675 (801)	86	6	6	6	21	7	4	19	4	6	6	1
	해남희망원	192 (214)	18	1	1	1	5	1	1	4	1	1	1	1
	인 애 원	96 (113)	15	1	1	1	3	1	1	4	1	1	1	-
	기쁨 원	85 (97)	13	1	1	1	2	1	1	3	1	1	1	-
	금 강 원	44 (53)	8	1	1	1	1	1	-	1	-	1	1	-
	진 성 원	216 (270)	24	1	1	1	9	2	1	6	1	1	1	-
	동 명 원	44 (54)	8	1	1	1	1	1	-	1	-	1	1	-
제주	소 계	155 (172)	27	2	2	2	5	2	2	5	2	2	2	1
	제주시립희망원	76 (90)	14	1	1	1	3	1	1	2	1	1	1	1
	서귀포시립사랑원	79 (83)	13	1	1	1	2	1	1	3	1	1	1	-

※ 입소인원은 2006. 7~2007. 6월말 기준, ()는 입원환자 포함 인원

제 2 절 부랑인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

부랑인 인권에 관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반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현장 사례발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⁶⁾

기존 부랑인시설의 전반적인 문제 및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 협 외(2004) “한국의 소수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방안 연구”에서 부랑인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랑인 사업 문제 중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랑인 복지시설 관계자 및 일반인의 인식에 관련한 문제이고, 둘째, 부랑인복지시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시설생활자의 혼합수용, 셋째, 시설관리 인력의 절대부족, 넷째, 시설 운영비의 지원 부족, 다섯째, 부랑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4항과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법에 해당되고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은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마지막으로 시설프로그램의 문제로 재활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자활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태영(2001)은 “부랑인복지시설의 발전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발전적 과제를 복지의식영역, 제도적인 영역, 시설운영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복지의식영역에서의 과제로 부랑인복지시설 관계자의 의식전환, 주민의식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제도적인 영역으로 시설생활자의 특성별 시설보호, 입소 전 지원기관 설치, 부랑인복지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영역의 과제로 시설직원의 적정한 배치와 처우 향상, 적정한 시설 운영비의 지원, 효과적인 자립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실(2005)의 ‘부랑인복지시설 방문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부랑인시설의 당면과제로는 첫째 부랑인시설의 위상 정립 및 명확화 필요, 둘째, 입·퇴소절차의 투명성, 실질적 심사의 확보, 셋째, 인권에 대한 권리고지 방식의 다양화, 넷째, 시설장애 의한 자의적인 정신병원 입원절차의 개선, 다섯째, 장기생활자들의 사회복지귀를 위한 체계 필요, 여섯째,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상황의 개선, 일곱째, 직원들의 자격요건의 철저한 조사,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귀를 위한 지지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기과제로는 첫째, 부랑인시설 입소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 둘째,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화, 개방화 및 전문화, 셋째, 생활자의 인권보장을 제시하였다.

한국도시연구소(2002)에 의해 연구된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조사’에서 현행 부랑인 보호제도의 개선책과 예방차원의 대책으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랑인 보호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

6)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생활인 및 시설직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고민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만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소화천사의 집의 ‘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행복’, 부산광역시 소재 가온의 ‘당사자에 의한 권리 찾기’, 충북장애인재활협회의 ‘충북장애인시설 인권실태와 증진방안’ 등과 같이 개별시설에서의 생활인의 인권규정 제정과 실천, 지역차원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부랑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 확대, 둘째, 전문기능에 따른 현행 보호시설의 개편, 셋째, 적절한 노동의 기회와 여가 프로그램의 확충, 넷째, 노숙자 의료 체계의 개선, 다섯째,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제도이다. 예방차원의 대책으로 첫째, 보호시설의 아동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둘째, 그룹 홈과 청소년 쉼터의 확충, 셋째, 건강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과 상담, 넷째, 여성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및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부랑인생활시설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들 수 있다. 현행 부랑인생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모태를 두고 '부랑인시설 설치·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부랑인생활시설 생활인들은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활프로그램과 자활프로그램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의 기능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혼합 생활을 하는 현재의 시설들은 기능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활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앞서 제기하였듯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가 아니라 생활인들의 인권이 절대적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제3장 연구결과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광주, 전남·북, 제주 부랑인시설 생활인 현황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251명 가운데 남자가 77.7% 그리고 여자가 22.3%로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1.32세(표준편차 11.85세)였으며, 50대 이상이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3%, 60대 14.7%, 30대 10.0%, 70대 이상 6.8%, 20대 6.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응답자 절반 가까이인 48.0%가 미혼이었다. 18.4%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으며, 이혼 21.2%, 별거 7.2%, 사별 3.2%, 기타 2.0%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 일반적 사항

구	분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	192	76.5	
	여	59	23.5	
	합계	251	100.0	
연령	20대	15	6.0	mean=51.32 SD=11.6
	30대	25	10.0	
	40대	66	26.3	
	50대	91	36.3	
	60대	37	14.7	
	70대 이상	17	6.8	
	합계	251	100.0	
결혼상태	미혼	120	48.0	
	결혼	46	18.4	
	이혼	53	21.2	
	별거	18	7.2	
	사별	8	3.2	
	기타	5	2.0	
	합계	250	100.0	

2. 현재시설에서의 거주기간

현재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해 15년 이상이 25.7%로 현재의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7%, 3년 이상 5년 미만 15.8%, 1년 이상 3년 미만 14.9%, 1년 미만 8.7%로 나타났다.

<표 6> 현재 시설에서의 거주 기간

구 분		빈도	백분율(%)
현재시설에서 생활기간	1년미만	21	8.7
	1년이상 3년미만	36	14.9
	3년이상 5년미만	38	15.8
	5년이상 10년미만	50	20.7
	10년이상 15년미만	34	14.1
	15년이상	62	25.7
	합계	241	100.0

3. 장애유형 및 장애인등록

생활인들의 장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 41.2%가 ‘장애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 16.5%, ‘알코올중독’ 12.2%, ‘지체장애’ 9.0%, ‘시각장애’ 2.4%, ‘언어장애’ 1.6%, ‘시각장애’ 2.4%, ‘청각장애’ 1.2%, 기타 1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66.8%가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2%는 ‘등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7> 장애유형 및 장애인등록 여부

구 분		빈도	백분율(%)
장애유형 (복수응답)	없다	105	41.2
	정신지체장애	13	5.1
	정신장애	42	16.5
	언어장애	4	1.6
	지체장애	23	9.0
	청각장애	3	1.2
	시각장애	6	2.4
	알코올중독	31	12.2
	기타	28	11.0
	합계	255	100.0
장애등록여부	했다	78	33.2
	하지 않았다	157	66.8
	합계	235	100.0

4. 연고자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가능한 연고자가 있는 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54.6%가 ‘가족에게’, 16.2%는 ‘친척에게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는 ‘연고자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친구에게’ 7.0%, ‘함께 지내던 동료’ 1.0%로 나타났다.

<표 8> 신상변동시 연락할 연고자

구	분	빈도	백분율(%)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가능한 연고자	없다	61	20.2
	가족	165	54.6
	친척	49	16.2
	친구	21	7.0
	함께 지내던 동료	3	1.0
	기타	3	1.0
	합 계	302	100.0

5. 현재복용하고 있는 약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기타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제외하고는 항정신정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가 23.3%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약’ 15.8%, ‘내과 질환 약’ 9.4%, ‘당뇨병 약’ 6.0%, ‘관절염 약’ 4.5% 순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구	분	빈도	백분율(%)
현재복용하고 있는 약 (복수응답)	고혈압 약	42	15.8
	당뇨병 약	16	6.0
	항정신성 의약품	62	23.3
	관절염약	12	4.5
	내과 질환 약	25	9.4
	기타	109	41.0
	합계	266	100.0

6. 근로능력

일상생활정도와 근로능력에 대해 응답자 65.2%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직업활동이 자유롭다’라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다’ 20.9%, ‘간단한 활동이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없다’ 7.4%,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가 4.1%로 나타났다.

<표 10> 근로능력

구 분		빈도	백분율(%)
일상생활 정도와 근로능력	일상생활불가능하고 항상 도움 필요	10	4.1
	간단한 활동이 가능하며 근로능력 없다	18	7.4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근로능력 없다	51	20.9
	일상생활 가능하고 직업 활동 자유롭다	159	65.2
	기타	6	2.5
	합 계	244	100.0

7. 퇴소 의향

“생활인들에 퇴소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4.4%가 ‘있다’, 45.6%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소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37.5%로 가장 많았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 23.2%, ‘시설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16.1%, ‘시설운영자의 부당함 때문에’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퇴소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퇴소 후 갈 곳이 없어서’가 36.8% 가장 높았으며, ‘장애 등 건강문제 때문에’ 13.5%, ‘벌어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11.0%,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5.9%, ‘다시 시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서’가 5.1%로 나타났다.

<표 11> 퇴소의향

구 분		빈도	백분율(%)
퇴소의향	있다	113	45.6
	없다	135	54.4
	합 계	248	100.0
퇴소의향 있다	시설에서 너무 오래살아서	18	16.1
	시설운영자의 부당함 때문에	2	1.8
	취업을 하고 싶어서	26	23.2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8	7.1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42	37.5
	시설의 규율이 엄격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1	.9
	기타	15	13.4
	합 계	112	100.0
퇴소의향 없다	퇴소 후에 갈곳이 없어서	50	36.8
	장애 등 건강문제 때문에	32	23.5
	다시 시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서	7	5.1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8	5.9
	벌어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15	11.0
	기타	24	17.6
	합 계	136	100.0

제 2 절 시설입소 경로 및 과정

시설의 입소경로는 살펴보는 것은 인권에 있어 '자기 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과거 부랑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탄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 스스로 선택하였는지, 입소를 강요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랑인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시설입소에 대해 시설입소경로와 시설입소과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시설입소경로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21.2%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해’ 26.8%, ‘경찰관서에 의해’ 19.2%, ‘배회하다 행정기관에 의해’ 12.8%, ‘주위의 아는 사람 권유로’ 8.4%, ‘다른 시설에서의 전원’ 5.6%, ‘상담센터 등의 의뢰에 의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시설입소경로

구 분		빈도	백분율(%)
시설입소 경로	자진입소	53	21.2
	가족에 의해	67	26.8
	배회하다 행정기관에 의해	32	12.8
	경찰관서에 의해	48	19.2
	다른 시설에서 전원	14	5.6
	상담센터 등의 의뢰에 의해	4	1.6
	주위 아는 사람권유로	21	8.4
	기타	11	4.4
	합계	250	100.0

2. 시설입소과정

시설입소과정은 입·퇴소심사위원회, 연고자연락여부, 입소당시 건강검진여부, 시설 생활 적응 배려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설에 들어올 때 입소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7.6%, ‘그렇지 않다’ 31.7%, ‘모르겠다’ 20.7%로 나타났다. ‘모르겠다’의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입소심사는 생활인이 직접 입소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기 보다는 대부분 서류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당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7.6%, ‘그렇지 않다’ 27.9%, ‘모르겠다’ 8.6%로 나타났다. 입소 당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22.4%, ‘모르겠다’ 7.3%로 나타났다. “입소 시 일정기간 시설 적응에 배려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74.6%가 ‘그렇

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19.7%, '모르겠다'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입소과정이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입소심사위원회에 생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 연구자 연락, 건강검진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표 13> 시설입소과정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비고
현재 시설에 들어올 때 입소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117 (47.6)	78 (31.7)	51 (20.7)	N=246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155 (63.5)	68 (27.9)	21 (8.6)	N=244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172 (70.2)	55 (22.4)	18 (7.3)	N=245
입소 시 일정기간 시설 적응에 배려를 받았다.	182 (74.6)	48 (19.7)	14 (5.7)	N=244

제 3 절 생활인의 인권실태

1. 생활환경

시설 생활인의 환경에 대해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원수의 적절성, 일과 시간 후 자유시간, 직원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여부, 사생활감시, 자유로운 대화, 시설운영에 대한 생활인의 의견반영, 원하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는지, 본인의 통장 잔액 확인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1.6%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6%,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 0.8%로 나타났다. 시설의 설립시기, 방 규모에 따라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인원수는 최소 4명에서 최고 10명까지 다양하였다.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9.8%, ‘그렇다’ 56.9%, ‘그저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과 시간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서 불편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9.5%가 ‘매우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다’ 6.4%, ‘매우 그렇다’ 4.8%로 나타났다.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0.1%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8.1%, ‘그저 그렇다’ 6.9%, ‘매우 그렇다’ 4.9%로 나타났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5.9%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7.2%,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 2.0%로 나타났다.

“생활인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4.2%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22.0%, ‘그렇지 않다’가 11.0%, ‘매우 그렇지 않다’ 2.8%로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8%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람과 방을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6.6%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부정적 응답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43.3%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1.1%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9.6%, ‘그저 그렇다’ 5.6%, ‘매우 그렇지 않다’ 3.6%로 나타났다.

“본인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35.8%, ‘그렇지 않다’ 29.3%, ‘그렇다’ 18.7%, ‘그저 그렇다’ 11.0%, ‘매우 그렇지 않다’ 5.3%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5.6%로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공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생활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 하다고 생각 한다	70 (28.0)	134 (53.6)	24 (9.6)	20 (8.0)	2 (0.8)	N=250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74 (29.8)	141 (56.9)	21 (8.5)	8 (3.2)	4 (1.6)	N=248)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 서 불편하다	12 (4.8)	16 (6.4)	23 (9.2)	127 (51.0)	71 (28.5)	N=249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다	12 (4.9)	20 (8.1)	17 (6.9)	124 (50.4)	73 (29.7)	N=246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 람들과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 나 눌 수 있다	77 (30.9)	137 (55.0)	18 (7.2)	12 (4.8)	5 (2.0)	N=249
생활인 대표를 통해 생활인의 의 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된다	51 (20.7)	107 (43.5)	54 (22.0)	27 (11.0)	7 (2.8)	N=246
원하는 사람과 방을 함께 쓸 수 있다	48 (19.4)	92 (37.2)	44 (17.8)	53 (21.5)	10 (4.0)	N=247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 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84 (33.7)	118 (47.4)	14 (5.6)	24 (9.6)	9 (3.6)	N=249
본인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공고 한다	46 (18.7)	88 (35.8)	27 (11.0)	72 (29.3)	13 (5.3)	N=246

2. 시설환경

시설환경에 대해 침실의 청결정도, 냉난방, 화장실 청결정도, 세면장 이용의 편리성,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의 편리성, 운동공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침실은 청결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6.0%, ‘그렇다’ 52.8%로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지 않다’ 1.6%, ‘매우 그렇지 않다’ 0.4%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은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6.4%, ‘그렇다’ 55.2%, ‘그렇지 않다’ 4.4%, ‘그저 그렇다’ 4.0%로 나타났다.

“침실규모는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61.7%, ‘매우 그렇다’ 27.0%, ‘그저 그렇다’ 6.9%, ‘그렇지 않다’ 4.0%, ‘매우 그렇지 않다’ 0.4%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청결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4.8%, ‘매우 그렇다’ 27.8%, ‘그저 그

렇다' 12.5%,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1.2%로 나타났다.

“세면장 이용이 편리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7.2%, '매우 그렇다' 26.8%, '그저 그렇다' 11.2%,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1.2%로 나타났다.

“냉방장치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2.0%, '매우 그렇다' 26.0%, '그저 그렇다' 12.2%, '그렇지 않다' 7.7%, '매우 그렇지 않다' 2.0%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각 방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28.3%, '그저 그렇다' 13.8%,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 2.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세탁실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개 시설은 생활실 각 층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운동할 공간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25.8%, '그저 그렇다' 12.9%, '그렇지 않다' 7.3%, '매우 그렇지 않다' 2.8%로 나타났다.

<표 15> 시설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침실은 청결하다	90(36.0)	132(52.8)	23(9.2)	4(1.6)	1(0.4)	N=250
겨울철 난방은 된다	91(36.4)	138(55.2)	10(4.0)	11(4.4)	-	N=250
침실의 규모가 적당하다	67(27.0)	153(61.7)	17(6.9)	10(4.0)	1(0.4)	N=248
화장실이 청결하다	69(27.8)	136(54.8)	31(12.5)	9(3.6)	3(1.2)	N=248
세면장 이용이 편리하다	67(26.8)	143(57.2)	28(11.2)	9(3.6)	3(1.2)	N=250
냉방장치는 되어 있다	64(26.0)	128(52.0)	30(12.2)	19(7.7)	5(2.0)	N=246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하다	70(28.3)	123(49.8)	34(13.8)	14(5.7)	6(2.4)	N=247
운동할 공간이 적당하다	64(25.8)	127(51.2)	32(12.9)	18(7.3)	7(2.8)	N=248

3. 건강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 상담, 정기적 보건교육 실시 여부, 약물교육 여부, 외부 진

료와 치료, 의무실 출입, 운동과 휴식, 위생교육, 건강 향상 여부 등을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건강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8.0%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0%,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0.8%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응답자 65.9%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20.1%, ‘매우 그렇지 않다’ 2.8% ‘그저 그렇다’ 11.2%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1%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0%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49.9%가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약물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 경우 외부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그렇다’ 55.0%, ‘매우 그렇다’ 37.3%로 나타났다. 반면 ‘그저 그렇다’ 5.6%, ‘그렇지 않다’ 1.6%, ‘매우 그렇지 않다’ 0.4%로 아플 경우 외부 진료와 치료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89.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6.4%,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용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무실 출입과 관련하여 ‘그렇다’ 53.0%, ‘매우 그렇다’ 29.7%로 출입이 자유롭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2%, ‘그렇지 않다’ 6.0%, ‘매우 그렇지 않다’ 2.0%로 1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6.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9.7%,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0.4%로 조사되었다.

생활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21.3%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그저 그렇다’ 18.1%, ‘그렇지 않다’ 9.6%, ‘매우 그렇지 않다’ 2.4%로 총 30.1%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처음 입소할 때 보다 건강이 좋아졌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45.8%, ‘매우 그렇다’ 27.3%로 응답해 처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73.1%였다. 반면 “처음 입소 당시보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인 답변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 17.7%, ‘그렇지 않다’ 7.2, ‘매우 그렇지 않다’ 2.0%로 나타났다.

<표 16> 건강생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건강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95(38.0)	125(50.0)	20(8.0)	8(3.2)	2(0.8)	N=250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받고 있다	42(16.9)	122(49.0)	28(11.2)	50(20.1)	7(2.8)	N=249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35(14.1)	89(35.9)	39(15.7)	72(29.0)	13(5.2)	N=248
아플 경우 외부(병원 등)진료과 치료가 가능하다	93(37.3)	137(55.0)	14(5.6)	4(1.6)	1(0.4)	N=249
건강검진, 예방접종, 병원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93(37.2)	131(52.4)	16(6.4)	5(2.0)	5(2.0)	N=250
언제든지 의무실 출입이 자유롭다	74(29.7)	132(53.0)	23(9.2)	15(6.0)	5(2.0)	N=249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70(28.2)	144(58.1)	24(9.7)	9(3.6)	1(0.4)	N=248
생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53(21.3)	121(48.6)	45(18.1)	24(9.6)	6(2.4)	N=249
처음 입소할 때 보다 건강이 좋아졌다	68(27.3)	114(45.8)	44(17.7)	18(7.2)	5(2.0)	N=249

4. 식생활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당의 청결, 정해진 식사시간의 식사 여부, 식단, 원할 때 외식이 가능한가, 식사의 만족정도, 급식 및 식사도구의 위생상태, 환자식 배려 여부, 식수위생, 간신구입여부, 간단한 음식 조리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응답자 90.4%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4%, ‘그렇지 않다’ 0.4%, ‘매우 그렇지 않다’ 0.8%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식당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0.8%, ‘그저 그렇다’ 12.4%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렇다’ 22.8%, ‘매우 그렇다’ 15.6%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식사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51.8%, ‘매우 그렇다’ 22.5%가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

다' 12.9%, '그저 그렇다' 10.8%,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4.9%가 공식적인 행사나 일 때문에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4.7%, '매우 그렇다' 27.9%로 82.6%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9%, '그렇지 않다' 6.9%,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할 때 외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1.5%와 23.4%로 응답자 64.9%가 외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 18.1%, '그저 그렇다' 12.1%,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부정적인 답변이 35.0%였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 48.6%, '매우 그렇다' 26.1%, '그저 그렇다' 17.3%,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4.0%나 타났다.

<표 17> 식생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식당은 청결한가	95(38.0)	131(52.4)	21(8.4)	1(0.4)	2(0.8)	N=250
식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가	39(15.6)	57(22.8)	31(12.4)	96(38.4)	27(10.8)	N=250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다	56(22.5)	129(51.8)	27(10.8)	32(12.9)	5(2.0)	N=249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한다	69(27.9)	135(54.7)	22(8.9)	17(6.9)	4(1.6)	N=247
내가 원할 때 외식을 할 수 있다	58(23.4)	103(41.5)	30(12.1)	45(18.1)	12(4.8)	N=248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한다	65(26.1)	121(48.6)	43(17.3)	10(4.0)	10(4.0)	N=249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59(23.6)	143(57.2)	22(8.8)	16(6.4)	10(4.0)	N=250
급식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73(29.2)	141(56.4)	26(10.4)	6(2.4)	4(1.6)	N=250
식사도구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75(30.0)	141(56.4)	25(10.0)	7(2.8)	2(0.8)	N=250
환자의 경우 따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환자식을 제공한다	68(27.3)	115(46.2)	34(13.7)	22(8.8)	10(4.0)	N=249
식수는 깨끗하다	83(33.5)	149(60.1)	11(4.4)	2(0.8)	3(1.2)	N=248
돈이 있다면 간식을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다	83(33.2)	130(52.0)	19(7.6)	12(4.8)	6(2.4)	N=250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	25(10.0)	50(20.0)	31(12.4)	103(41.2)	41(16.4)	N=250

5. 의생활

의생활과 관련하여 옷의 위생상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 옷장이나 사물함의 충분정도, 옷의 직접구입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의복과 관련한 생활에 대해 생활인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깨끗한 옷을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에 대해 응답자 88.7%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 6.5%,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4.8%로 조사되었다.

과거에 생활시설은 대부분 자유로운 옷을 입기 보다는 제복을 입었다. 이는 생활인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성격이 짙었다.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72.6%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통일된 제복을 입어야 하거나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그저 그렇다' 10.9%,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6.5%로 이었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시설은 제복이라 할 수 있는 옷을 연령이 많은 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옷장이나 사물함이 충분하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0.9%, '그렇지 않다' 5.2%, '매우 그렇지 않다'가 4.4%로 나타났다.

"원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65.1%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20.3%는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6%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8> 의생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깨끗한 옷을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	97 (39.1)	123 (49.6)	16 (6.5)	9 (3.6)	3 (1.2)	N=248
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복을 입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70 (28.2)	110 (44.4)	27 (10.9)	33 (13.3)	8 (3.2)	N=248
옷장이나 사물함이 충분하다	71 (28.6)	126 (50.8)	27 (10.9)	13 (5.2)	11 (4.4)	N=248
내가 원하는 옷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58 (23.6)	102 (41.5)	36 (14.6)	38 (15.4)	12 (4.9)	N=246

6. 직업재활

직업재활 훈련 생활인들이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직업 활동 및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훈련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작업 활동이 진행된다.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재활프로그램 진행여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만족도,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여부, 프로그램 및 작업공간의 쾌적성, 자발적 참여여부, 본인의 수익금 입금여부, 안전시설, 프로그램 시간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에 대해 응답자 78%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7%, ‘그저 그렇다’가 15.3%로 나타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시설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재활프로그램 만족에 대해 응답자 40.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9.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61.7%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8.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환경에 대해 63.9%는 ‘쾌적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36.1%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시설내외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얻어 지는 수익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는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29.7%가 ‘매우 그렇다’, 48%는 ‘그렇다’라고 응답해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 13.4%, ‘그렇지 않다’ 5.7%, ‘매우 그렇지 않다’가 3.7%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안전시설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64.2%는 안전시설이 확보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35.8%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직업재활프로그램 시간에 대해 37.4%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시간이 길거나 짧다고 보고 있으며, 52.6%는 ‘적당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9> 직업재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48 (19.4)	123 (49.6)	28 (11.3)	38 (15.3)	11 (4.4)	N=248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만족 한다	50 (20.2)	97 (39.1)	54 (21.8)	38 (15.3)	9 (3.6)	n=248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44 (17.7)	109 (44.0)	41 (16.5)	43 (17.3)	11 (4.4)	N=248
직업재활프로그램 공간이 쾌적 하다	46 (18.6)	112 (45.3)	57 (23.1)	27 (10.9)	5 (2.1)	N=247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43 (17.6)	110 (44.9)	50 (20.4)	33 (13.5)	9 (3.7)	N=245
직업재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3 (29.7)	118 (48.0)	33 (13.4)	14 (5.7)	8 (3.3)	N=246
작업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이 되어 있다	52 (21.1)	106 (43.1)	62 (25.2)	21 (8.5)	5 (2.0)	N=246
직업재활프로그램 시간이 적당 하다	49 (19.9)	105 (42.7)	59 (24.0)	28 (11.4)	5 (2.0)	N=246

7. 교육, 문화, 종교 생활

교육, 문화, 종교 생활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전화, 서신, 외출을 할 수 있는가, 연고자 면회, 외박, 특정 종교의 강요, 생일, 여행, 개인 취향에 따른 문화생활, 근린시설 이용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8%, ‘그렇다’ 51.2%, ‘그저 그렇다’ 8.8%, ‘그렇지 않다’ 6.4%, ‘매우 그렇지 않다’가 2.8%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8%는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2.4%,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90.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6.4%, ‘그렇지 않다’ 2.4%, ‘매우 그렇지 않다’가 0.4%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3.0%, ‘그렇다’ 45.6%로

68.6%가 외출이 자유롭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0.1%,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지 않다’가 4.4%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다고 응답한 자는 3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응답자가 자유로운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연고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92.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2%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외박이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0.7%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응답한 경우는 39.4%로 나타나 외출의 제한과 함께 외박 역시 일정정도 제한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할 수 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9.5%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30.5%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없거나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일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 78.8%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21.8%는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4.5%, ‘그렇다’ 45.8%, ‘그저 그렇다’ 18.9%, ‘그렇지 않다’ 16.9%, ‘매우 그렇지 않다’가 4.0%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39.8%로 개인적인 문화 향유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가까이에 있는 공원 등과 같은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6.8%, ‘그렇다’가 42.4%로 응답자 5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 18.8%, ‘그렇지 않다’ 17.2%, ‘매우 그렇지 않다’가 4.8%로 응답자 41.2%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자유로운 외출, 자유로운 외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하여 볼 때 일정정도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교육, 문화, 종교생활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다	77(30.8)	128(51.2)	22(8.8)	16(6.4)	7(2.8)	N=250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다	70(28.0)	125(50.0)	31(12.4)	20(8.0)	4(1.6)	N=250
TV, 비디오 시청은 자유롭다	90(36.0)	137(54.8)	16(6.4)	6(2.4)	1(0.4)	N=250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	57(23.0)	113(45.6)	25(10.1)	42(16.9)	11(4.4)	N=248
연고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81(32.5)	150(60.2)	8(3.2)	5(2.0)	5(2.0)	N=249
외박이 자유로운 편이다	44(17.7)	107(43.0)	33(13.3)	47(18.9)	18(7.2)	N=249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51(20.5)	122(49.0)	15(6.0)	42(16.9)	19(7.6)	N=249
개별적으로 생일을 챙겨준다	48(19.2)	149(59.6)	23(9.2)	18(7.2)	12(4.8)	N=250
여행을 할 수 있다	33(13.2)	105(42.0)	41(16.4)	54(21.6)	17(6.8)	N=250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36(14.5)	114(45.8)	47(18.9)	42(16.9)	10(4.0)	N=249
시설 가까이 있는 공원 등과 같은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한다	42(16.8)	106(42.4)	47(18.8)	43(17.2)	12(4.8)	N=250

8.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가능한가,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직원들의 친절, 상담 후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86.4%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7.2%, ‘그렇지 않다’ 4.8%,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연고자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4.8%, ‘그렇다’ 54.4%, ‘그저 그렇다’ 10.4%, ‘그렇지 않다’ 7.2%,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32.4%, ‘그렇다’ 47.2%, ‘그저 그렇다’ 10.8%,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4%, ‘그렇다’ 49.2%로 응답자 71.6%가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16.0%, ‘그렇지 않다’ 9.6%, ‘매우 그렇지 않다’ 2.8%로 응답의 28.4%가 상담 후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상담서비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다	82(32.8)	134(53.6)	18(7.2)	12(4.8)	4(1.6)	N=250
연고자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다	62(24.8)	136(54.4)	26(10.4)	18(7.2)	8(3.2)	N=250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다	81(32.4)	118(47.2)	27(10.8)	20(8.0)	4(1.6)	N=250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56(22.4)	123(49.2)	40(16.0)	24(9.6)	7(2.8)	N=250

9. 직원들의 태도

직원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친절정도,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른 차별, 욕설이나 비인간적 처우, 건의사항 수용, 직원의 구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한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8.4%, ‘그렇다’ 49.6%로 응답자 88%가 친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8.4%, ‘그렇지 않다’ 2.0%,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23.2%, ‘그렇지 않다’ 47.6%, ‘그저 그렇다’ 9.6%, ‘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3.6%로 응답자 29.2%는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31.2%, ‘그렇지 않다’ 50.4%, ‘그저 그렇다’ 5.6%, ‘그렇다’ 8.8%, ‘매우 그렇다’가 4.0%로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8%로 나타났다.

“건의가 잘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0.8%, ‘그렇다’ 47.6%로 응답자 68.4%는 건의가 잘 받아들여진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 21.2%, ‘그렇지 않다’ 8.0%,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로 부정적인 응답은 32.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원이 나를 때린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 89.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때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로 나타났다.

<표 22> 직원들의 태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고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하다	96(38.4)	124(49.6)	21(8.4)	5(2.0)	4(1.6)	N=250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한다	9(3.6)	40(16.0)	24(9.6)	119(47.6)	58(23.2)	N=250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 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	10(4.0)	22(8.8)	14(5.6)	126(50.4)	78(31.2)	N=250
건의가 잘 받아들여 진다	52(20.8)	119(47.6)	53(21.2)	20(8.0)	6(2.4)	N=250
직원이 나를 때린 적이 있다	7(2.8)	6(2.4)	14(5.6)	123(49.4)	99(39.8)	N=249

제 4 절 자기결정권과 자존감

1.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에 대해 입·퇴소심사위원회 회의 참여요구, 방의 선택 및 이전요구, 필요한 서비스 및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개선 요구,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요구, 자신의 재산 확인 및 정보제공 요구,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에 대한 정보 알권리 요구, 노후 보장에 관한 요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항상 제시 할 수 있는 요구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생활인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소 1점은 ‘매우 그렇다’, 최대 5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1점에 가까울수록 권리의

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 2점 정도로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 참여 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3> 자기결정권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사례수
자신과 관련된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2.5749	1	5	1.0939	247
생활하는 방의 선택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2.3680	1	5	1.0261	25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198	1	5	.9365	247
부당한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1815	1	5	.9239	248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0927	1	5	.8837	248
자신의 재산(통장 잔고 등)에 대해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9839	1	5	.8196	248
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2.0972	1	5	.8402	247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재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984	1	5	.9135	247
노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2591	1	5	.9741	247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항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484	1	5	.9120	248

2. 자존감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치, 성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을 잘 할 수 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소 1점은 '매우 그렇다', 최대 5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1점에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응답결과 전반적인 자존감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3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랑인생활시설에서 생활

하는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시설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4> 자존감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2.7992	1.00	4.00	.7930	249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2.7309	1.00	4.00	.7956	249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2.4440	1.00	4.00	.8207	250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7189	1.00	4.00	.8852	249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5663	1.00	4.00	.7104	249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7671	1.00	4.00	.7254	249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	2.7711	1.00	4.00	.7404	249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8112	1.00	4.00	.6724	24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3360	1.00	4.00	.7627	247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2329	1.00	4.00	.7473	249

제 5 절 참정권과 개선요구

1. 참정권

참정권과 관련하여 투표를 어디에서 하는지, 특정 후보 선택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투표하는 장소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설치한 투표소에 나가서 한다'가 73.8%,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한다' 13.7%, '부재자 투표를 한다'가 5.6% 기타 6.9%로 나타났다.

<표 25> 투표장소

구 분		빈도	백분율(%)
투표소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한다	34	13.7
	선관위에서 설치한 투표소에 나가서 한다	183	73.8
	부재자 투표를 한다	14	5.6
	기타	17	6.9
	합 계	248	100.0

“투표할 때 특정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없다’ 83.2%, ‘있다’ 14.0%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4%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고 밝혀 투표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강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특정후보 선택강요 경험

구 분		빈도	백분율(%)
특정후보 선택강요 경험	있다	35	14.0
	없다	208	83.2
	기타	7	2.8
	합 계	250	100.0

2. 개선요구

시설운영 문제 및 생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문제 및 생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91.6%가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6.4%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7>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의견제시 및 희망사항 요구 경험

구 분		빈도	백분율(%)
개선요구 경험	있다	16	6.4
	없다	228	91.6
	기타	5	2.0
	합계	249	100.0

제 6 절 결론 : 요약과 제언

- 본 연구는 부랑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251명 가운데 남자가 77.7%, 여자가 22.3%로 남성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51.32세(표준편차 11.85세)였으며,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인들의 장애상태를 보면, ‘장애가 없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41.2%), 정신장애(16.5%), 알코올중독(12.2%), 지체장애(9.0%)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66.8%가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유념해보아야 하는 응답이다.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54.6%가 ‘가족에게’, 16.2%는 ‘친척에게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들은 약 60%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5.2%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직업활동이 자유롭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소 의향’이 없는 응답자보다 있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았다. 시설입소는 본인 스스로(21.2%)한 경우보다, 타인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약 3배 이상 많은 60%가 넘는다. 이러한 응답의 의미는 부랑인시설에 입소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 의지보다 타인의 강제에 의해 입소하는 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
-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서 불편한가?”,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가?”,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집단생활하는 부랑인들은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인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6%가 나왔고, “생활인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약 20%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시설운영자들에 대한 시설생활인들의 문제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침실은 청결한가?”, “겨울철 난방은 되는가?”, “침실규모는 적당한가?”, “화장실은 청결한가?”, “세면장 이용이 편리한가?”, “냉방장치는 되어 있는가?”,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한가?”, “운동할 공간이 적당한가?”와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상담, 정기적 보건교육 실시 여부, 약물교육 여부, 외부 진료와 치료, 의무실 출입, 운동과 휴식, 위생교육, 건강 향상 여부 등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는데,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약물교육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0.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응답이라고 본다.

- 식당의 청결상태에 대해 90%이상의 응답자가 깨끗하다고 응답했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6.7%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8.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3.7%의 응답자가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부랑인시설이 대부분 외진 곳에 있고 근처에 영업용 식당이 없다고 볼 때, 시설의 식사시간을 놓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부랑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의생활과 관련하여 옷의 위생상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 옷장이나 사물함의 충분정도, 옷의 직접구입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40.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

다는 응답자도 38.3%가 되었다. “시설내의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로 9.4%나 되었다. 작업장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64.2%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하고 편지를 쓸 수 있는지,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이 자유로운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80.0%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약 20%정도,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약 40%가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집단생활의 속성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정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0.5%가 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부랑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8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이지 않는 응답자가 28.4%나 되었다.

□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하다는 응답자가 88%나 되지만, 직원들이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한다”라는 응답자도 20%가 넘었다.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2.8%가 되었다. 관련하여 직원들은 시설생활인들이 하는 건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0%를 넘는다.

□ 집단 생활하는 부랑인들의 참정권에 대해 설문을 하였는데, “투표할 때 특정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14%의 응답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부랑인들은 시설 입소과정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부랑인시설입소과정이 부랑인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랑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의미를 보이는 응답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이 적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일이건 시설의 공식적인 일이건 부랑인들이 식사시간을 놓쳤을 때, 이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한 부랑인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다른 항목보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운영자 혹은 종사자들이 시설내에서 부랑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부랑인들에 대한 약물교육이 좀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을 한 경우 조치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부랑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둘째 사항의 경우 상당부분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부랑인 시설의 지도감독 관청인 지방정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기획담당관실(2005.12), 부랑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 김동성(2004), “부랑인의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철(2004), “사회복지대상자로서 노숙인과 부랑인”, 생활과학연구 제9권.
- 매일경제, 2008년 3월 22일자.
- 박광준(2004)
- 보건복지부(2007), 2007년 상반기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2007년 6월말현재).
-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2007. 9. 5(수) 보도해명자료.
- 안석모(2007),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현황과 지역적 과제”, 우리복지시민연합, 제2차 시민복지포럼 자료집.
- 월간 말, 1998. 8월호, pp 100~107.
- 이진미(2002), “한국 부랑인 복지시설의 급식품질관리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8(3)pp318~327.
- 이태진·서동우·김미숙·남기철·김선미(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4. 8. 24.
- 최성숙(2000),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림(2000),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도시연구소(2002), 부랑인복지시설내 노인 인권 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2005), 2005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 김홍수영(2005),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노숙인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05년 봄호(통권 제65호).

설 문 지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부랑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생활인 여러분들의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생활인 여러분들의 인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조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부랑인 생활시설의 생활인 여러분의 인권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전화 062-710-9710~9714 / 팩스 062-710-9717)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소장

조사일시	2007년 월 일	조사자 성명	
------	-----------------	--------	--

1. 시설 입소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현재 시설에 들어올 때 입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입소 시 일정기간 시설 적응에 대한 배려를 받았다			

2.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함께 생활하는 방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일과 시간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직원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해서 불편하다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생활인 대표를 통해 생활인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반영 된다					
원하는 사람과 방을 같이 쓸 수 있다					
본인의 통장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공고 한다					

3. 시설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침실은 청결하다					
겨울철 난방은 된다					
침실의 규모가 적당하다					
화장실이 청결하다					
세면장 이용이 편리하다					
냉방장치는 되어 있다					
세탁실 및 건조실 이용이 편리하다					
운동할 공간이 적당하다					

4. 건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건강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받고 있다					
약물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아플 경우 외부(병원 등)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병원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의무실 출입이 자유롭다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생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처음 입소할 때 보다 건강이 좋아졌다					

5.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식당은 청결하다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식사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나 일로 식사 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있다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한다					
내가 원할 때 외식을 할 수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만족 한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급식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식사도구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환자의 경우 따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환자식을 제공 받는다					
식수는 깨끗하다					
돈이 있다면 간식을 편하게 사먹을 수 있다					
간단한 음식을 스스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					

6. 의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깨끗한 옷을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복을 입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옷장이나 사물함이 충분하다					
내가 원하는 옷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7. 직업재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만족 한다					
외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공간이 쾌적하다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한다					
직업재활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작업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이 되어 있다					
직업 재활프로그램 시간이 적당하다					

8. 교육, 문화, 종교 생활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유롭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다					
TV, 비디오 시청은 자유롭다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다					
연고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외박이 자유로운 편이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생일을 챙겨준다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시설 가까이에 있는 공원 등과 같은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한다					

9. 상담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연고자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 한다					
직원들이 자주 친절하게 근황을 묻는다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10. 직원들의 자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은 친절하다					
성별이나 생활인에 따라 차별을 한다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					
건의가 잘 받아 들여 진다					
직원이 나를 때린 적이 있다					

11.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자신과 관련된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하는 방의 선택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당한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신의 재산(통장 잔고 등)에 대해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재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항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2.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				
나는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13. 투표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한다()
- ② 선건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에 나가서 한다()
- ③ 부재자 투표를 한다()
- ③ 기타(_____)

14. 투표 할 때 특정 후보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_____)

15. 시설운영 문제 및 귀하의 생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중앙정부, 인권위원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시하거나 희망사항을 요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_____)

16. 끝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18.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19.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_____)

20. 현재 시설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21. 현재 시설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 ① 자진입소() ② 가족에 의해() ③ 배회하다 행정기관에 의해()
④ 경찰관서에 의해() ⑤ 다른 시설에서 전원()
⑥ 상담센터 등의 의뢰에 의해() ⑦ 주위 아는 사람의 권유로()
⑧ 기타 (_____)

22. 귀하의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연고자가 있으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응답 가능)

- ① 없다() ② 가족() ③ 친척() ④ 친구 ⑤ 함께 지내던 동료
⑥ 기타()

23.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없다() ② 정신지체장애() ③ 정신장애() ④ 언어 장애()
⑤ 지체장애() ⑥ 청각장애() ⑦ 시각장애()
⑧ 알코올 중독() ⑨기타 (_____)

24. 장애인 등록을 하셨습니까?

- ① 했다 () ② 하지 않았다()

25.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응답 가능)

- ① 고혈압 약() ② 당뇨병 약() ③ 항정신성 의약품()
④ 관절염약() ⑤ 내과 질환 약() ⑥ 기타(_____)

26. 귀하의 일상생활 정도와 근로능력은 어떠하십니까?

- 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며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 ② 일상생활 중 간단한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활동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다()
- ③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직업 활동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다()
- ④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직업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⑤ 기타(_____)

27. 현재의 시설에서 퇴소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 28-1번으로
- ② 없다 () → 28-2번으로

28-1. 현재의 시설에서 퇴소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시설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
- ② 시설운영자의 부당함 때문에 ()
- ③ 취업을 하고 싶어서 ()
- ④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
- ⑤ 사회에서 살고 싶어서()
- ⑥ 시설의 규율이 엄격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 ⑦ 기타(_____)

28-2. 현재 시설에서 퇴소할 의향이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① 퇴소 후에 갈 곳이 없어서 ()
- ② 장애 등 건강문제 때문에 ()
- ③ 다시 시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서()
- ④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 ⑤ 벌어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
- ⑥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